



## 1 국민연금

### 1-2 급부의 종류

#### (1) 노령기초연금

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된 기간 등을 합쳐서 25 년 이상일 때는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(2) 장애기초연금

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되신 분이나 20 세 전의 장애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장애복지연금을 받고 있던 분, 20 세 전의 장애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의한 지급제한이 있습니다.

#### (3) 유족기초연금

국민연금 가입 중의 사망, 또는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(원칙적으로 25 년)을 충족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,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 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아내, 혹은 아이(18 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,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20 세에 달할 때까지)에게 지급됩니다. 단, 사망한 자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종료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것이 조건입니다.